

보도시점 2023. 9. 5.(화) (배포 후 즉시) 배포 2023. 9. 5.(화)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176명(누계) 인정

-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599명 구제급여 지급,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 결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9월 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추가로 총 599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여부, 피해등급 결정, 폐암 피해구제 계획 및 피해 인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3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비롯해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7명에 대한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176명(누계)이 되었다.

아울러 이날 위원회는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에 따른 폐암 피해구제 계획을 논의하고, 폐암 사망자 1명에 대해 피해 인정을 의결했다.

* 고려대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에서 수행한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21.3~22.12)” 결과 등

환경부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 주요 내용.
2. 가습기살균제(PHMG) 폐암 발생 독성시험 결과 주요 내용.
3.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23.9.5. 기준).
4. 질의응답.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대응반	책임자	팀 장	안지애 (044-201-7510)
		담당자	사무관	허 현 (044-201-7511)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책임자	센터장	김영희 (032-560-8401)
		담당자	연구관	임정연 (032-560-8402)
		담당자	연구사	백용욱 (032-560-841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실	책임자	실 장	가순규 (02-2284-1430)
		담당자	연구원	안우진 (1833-9085)
		담당자	연구원	김미옥 (1833-9085)
		담당자	연구원	최유나 (1833-9085)

붙임 1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계획 주요 내용

- (추진경과) PHMG에 의한 폐암 유발 독성연구* 결과 도출('23.1월)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 보고('23.2월, 제33차 피해구제위)
 - *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21.3~'22.12)
- 폐암피해 관련 전문가 회의체(폐암전문 조사·판정소위원회) 신설·운영('23.3월~) 등을 통해 폐암피해 판정방법 및 피해등급 부여방안 등 논의
- (판정방법) 폐암피해 판정을 위한 전담 의료기관 및 전문가 회의체를 통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폐암)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을 검토하여 판정
 - ※ (판정절차) 건강피해 인정신청 → 환경 노출조사 → 전담 의료기관 건강피해조사 → 폐암전문 조사 판정소위원회 사전검토 → 조사 판정전문위원회 검토 → 피해구제위원회 의결
- 초기에는 위원간 이견이 적은 피해자(PHMG 사용, 저연령, 비흡연 등) 우선 구제, 차후 폐암 판정을 위한 의학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가구제 추진
- (추가연구) 가습기살균제 폐암피해 판정 활용을 위한 관련 연구 지속 추진*
 - * 폐암 발병 관련 역학 연구, 임상사례 분석, 가습기살균제 성분별 독성연구 등 5건 추진 중

붙임 2

가습기살균제(PHMG) 폐암 발생 독성시험 결과 주요 내용

- 연구명
 -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 PHMG에 의한 폐 질환 변화 관찰 연구('21.3~'22.12)*
 - *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연구 방법
 - PHMG 3개 농도(0.2, 1.0, 5.0 mg/kg)를 2주 간격으로 5회 분할 투여 (기도점적) 후, 20, 40, 54주*에 컴퓨터단층(CT) 촬영 및 조직병리 관찰
 - * 관찰기간별 대조군 각 30마리 및 농도군별 각 20마리 시험
- 주요 결과
 - (20주) 모든 PHMG 노출 동물에서 폐 염증 및 섬유화 등 발생 확인
 - (40주) 0.2 mg/kg과 1.0 mg/kg 노출군에서 각 1마리, 5.0 mg/kg 노출군 9마리에서 폐 악성종양 발생 확인
 - (54주) 0.2 mg/kg 노출군 1마리, 1.0 mg/kg 노출군 3마리, 5.0 mg/kg 노출군 14마리에서 폐 악성종양 확인

붙임 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23.9.5. 기준)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현황 (누계)

(단위 : 명, 억원)

신청자	총 지원대상*	구제급여 지급 대상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긴급의료 지원 대상	지원액
7,862	5,212	5,176	56	58	1,406

* 중복자 78명 제외

□ 구제급여 종류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구제급여								기타		
		요양 급여	요양 생활수 당	장 의비	간 병비	장 해 급여	특별유족 조위금	특 별 장 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추가지원 (배상차액)	진찰· 검사비	긴급의료 지원
금액	146,844	18,338	32,486	409	3,770	2,590	75,071	2,051	4,777	6,830	14	509
수급자수	3,607	2,696	816	164	120	18	795	795	64	31	56	47

□ 구제급여 지급내용

종 류	지원내용	현재 기준
요양급여	·건강피해로 인정받은 질환 치료비	치료비 중 피해자부담액
요양생활수당	·치료 외 요양이 필요한 경우, 피해등급에 따라 지급	197.0만 ~ 17.3만 원/월 + 구급차 이용비, 장거리 교통비
장의비	·피해자 사망 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약 310.0만원
간병비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정도를 고려하여, 간병등급에 따라 지급	4.1~6.7만원/일
특별유족조위금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지원	약 1억1,781만원
장해급여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	약 1억9,907만원~ 약 3,981만원
특별장의비	·피해인정 전,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의비 지원	약 310.0만원
구제급여조정금	·피해자 사망 당시까지 지원금이 특별유족조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既 지원금

1. 이번 독성연구 결과의 의미는?

- ☞ 이번 독성연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PHMG) 노출 시 폐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도출
- ☞ 다만, 가습기살균제 사용 후 폐암이 발병했더라도 타 유발요인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폐암피해 판정 시에는 사례별 검토가 필요

2.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 피해를 불인정하고 있었던 것인지?

- ☞ 폐암 피해를 불인정하고 있던 것은 아님
- ☞ 기존 연구만으로 폐암 피해를 본격적으로 개시하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하여, 폐암피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음
 -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후속 연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한 것임

3. 이번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폐암 피해신청자 중 일부만 구제했는데, 앞으로의 피해구제 계획은?

- ☞ 타 질환과 동일하게, 폐암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의학적 설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구제 예정
- 다만,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별 신청자별로 피해인정 여부 검토

4. 폐암피해를 건진이 개별심사 진행할 경우 시간소요가 큰데, 신속심사*로 진행을 검토해야 하지 않는지?

- ☞ 환경적, 유전적 요인에 따른 폐암 발생과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폐암 발생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 개별 피해자의 폐암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심사를 통한 의학적 검토가 불가피

※ (신속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심사방식 (관련 : 「가습기살균제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

5. 이전에도 폐암피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는지?

- ☞ '21.7월, 폐암피해를 인정한 사례 1건* 존재
- * (인정근거) 폐암 발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 도출 이전이기는 하나, 젊은 나이(20대) 발병, 비흡연, 노출·잠복기간 충분 등 개별적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피해를 인정
- ☞ 해당 사례의 경우, 저연령, 비흡연 등 가습기살균제 외에 폐암 발병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의학적 검토를 거쳐 피해가 인정됨

6. 구제급여 지급신청자 중 폐암을 진단받은 신청자는 몇 명인지?

- ☞ 현재까지 파악된 폐암 진단자는 206명임

7. 폐암피해 인정 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역은?

- ☞ 폐암피해 인정 시, 생존 피해자는 요양급여(치료비), 요양생활수당 등, 사망 피해자는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등을 특별법 규정에 따라 지급